

이런 점이 궁금합니다!

Q. 장애등급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
- A.** 장애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,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1. 만 65세 이상인 경우
 2. '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
 3. '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

Q.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?

- A.**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검사비용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합니다.
 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검사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합니다.
- 예) 검사비용이 15만원 소요시 :
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10만원 지급
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- 5만원 지급

Q.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?

- A.**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.

Q.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?

- A.**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.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, 우체국, 농협,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더불어 행복한 사회 우리함께 맞춰가요

하나. 말할 땐 눈높이를
둘. 걸을 땐 발걸음을


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

- **보건복지부** -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
 보건복지 콜센터 : 국번없이 129(www.129.go.kr)
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: www.mw.go.kr
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: www.bokjiro.go.kr/pension
- **국민연금공단** - 장애등급 심사제도 안내(장애등급 판정 관련 민원상담)
 국민연금 콜센터 : 국번 없이 1355
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 : 포털사이트에서 "장애심사센터" 검색
- **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** - 서비스 신청 접수, 대상자 결정·통지, 인적사항·소득·재산·관련조사, 제도상담 등

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, 장애인연금, 장애(아동)수당으로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.

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!



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대사
팜페라 테너 임형주

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!

신청대상

-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(1급, 2급, 3급 중복)
 ※ 만20세 이하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)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
 ※ 3급 중복장애 :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

수급 자격

-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
 - 소득인정액 :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
 - 선정기준액(2017년) : 단독가구 1,190,000원, 부부가구 1,904,000원

급여액(기초급여 + 부가급여)

- 기초급여**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(최대 204,010원)
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(20,000~284,010원)

지급 대상 및 금액

구분	합계		기초급여		부가급여	
	만18세~만64세	만65세 이상	만18세~만64세	만18세~만64세	만65세 이상	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284,010	284,010	204,010	80,000	284,010	
주거·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	274,010	70,000	204,010	70,000	70,000	
차상위초과	224,010	40,000	204,010	20,000	40,000	

※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됩니다. (만65세 생신 한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)

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 신청하세요!

신청대상

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(3급, 4급, 5급, 6급)

수급 자격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급여액

(단위 : 원)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보장시설 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장애수당	40,000	40,000	20,000

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하세요!

신청대상

만 18세 미만의 중증(1급, 2급, 3급 중복)·경증(3급, 4급, 5급, 6급) 장애아동

※ 만18세-만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)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수급

수급 자격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급여액

(단위 : 원)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	보장시설 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중증장애아동수당	200,000	150,000	70,000
경증장애아동수당	100,000	100,000	20,000

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?

[신청장소]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,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
- 1.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**
- 본인 신청 시
 - 신청자의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
 -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: 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개설 권장
 - 대리 신청 시
 - 대리인의 신분증 /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

- 2. 신청서 작성**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 - 소득 재산 신고서
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(본인 및 배우자)
 -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
 - 주택정보 제공동의서(중증장애인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)
 ※ 신청서식은 가까운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

- 3. 신청**
- 주민등록주소를 관할하는 읍,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

- 4. 심사**
- 자산조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)
 - 장애등급재심사(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)
 ※ 장애인연금,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해당

- 5. 결과통보**
-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

- 6. 지급**
- 매월 20일 연금 지급(토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)

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

- 이의신청**
- 대상 : 장애인연금 지급결정, 장애등급 심사 결정 등
 - 기한 :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
 - 장소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